



# 독일의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정보신청기관 : 법무연수원

## I. 머리말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한 독일의 법률은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이하 질서위반법)이다. 독일의 질서위반법은 형법과 행정법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형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질서위반에 대한 행위는 다른 법률들에서 질서위반금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die mit Geldbuße bedrohte Handlung) 또는 질서위반법 제3편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질서위반행위들이 해당되어지며, 이러한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면 질서위반금(Geldbuße)이 부과된다. 질서위반금은 형법의 벌금형(Geldstrafe)과는 구별되는 제재 수단으로서 최고한도의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에 특정구성요건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질서위반법은 1987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05년 3월 22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

고 있으며, 전체 내용은 총 4편, 25장, 1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질서위반법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과 그 행위주체(II), 질서위반법에 대한 실체법적 규정(III) 그리고 절차법적 규정(IV)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질서위반금부과를 위한 행위 및 행위주체

### 1. 질서위반금부과를 위한 행위

한국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서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예를 열거하여 범죄카탈로그를 만들어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제5조에서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특칙으로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질서위반법은 범죄카탈로그를 만들어 그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경범죄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특정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독일의 질서위반법은 우선 형벌과 한국의 범칙금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다른 법률에서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행위와 질서위반법 제3편에서 별도로 질서위반법에 해당되어지는 개별적인 질서위반에 관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 질서위반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1조)**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률에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가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면, 질서위반법에 의한 행위로 인정된다(동조 제1항). 그러나 유책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 행위는 질서위반행위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형법에 따른 형벌의 부과를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지만, 질서위반법 제1조에 의한 질서위반금부과를 규정한 행위는 불법의 강도와 유책성에 대한 요구가 형법전의 범죄보다 낮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서는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29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만약 금지된 옥내집회에 참

가한 자는 일천마르크(현재 오백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 질서위반법에 별도로 규정된 개별적인 질서위반행위<sup>1)</sup>**

**1) 개인신상에 대한 허위보고(제111조)**

- 관할 행정관청, 관할공무원 또는 연방군의 관할군인에게 자신의 이름, 출생일과 출생지, 가족상황, 직업, 주거지 또는 국적에 관하여 부정확한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자: 일천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관청, 공무원 또는 군인이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부주의로 알지 못한 자: 오백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2) 입법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제112조)**

- 연방입법기관 또는 각 주의 입법기관, 그러한 입법기관의 장이 그 건물 또는 대지의 출입 또는 체류, 건물내 또는 대지위에서의 공공안녕과 질서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오천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3) 허용되지 않은 군중에의 가담(제113조)**

- 일반군중무리에 가담하거나 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무리에게 세번의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서 해산하지 않는 자: 일천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1) 해당 조항에서 별도의 질서위반금에 대한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금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17조에 따른 질서위반금이 부과된다.

- 그러한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부주의로 알지 못한 자: 오백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4) 군사시설에의 진입(제114조)

- 군사시설 또는 안전으로 인한 연방군의 업무수행지역에 대한 관찰권자의 진입금지를 위반한 자

#### 5) 죄수와의 교류(제115조)

- 기결수뿐만 아니라 미결수를 포함하여 죄수에게 권한없이 물건 또는 소식을 전하거나, 그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은 자, 교도시설내에 거주하고 있는 죄수와 언어와 신호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촉한 자

#### 6) 대중에게 질서위반을 부추기는 행위(제116조)

- 집회에서 또는 문서, 음성자료, 영상자료 기타 표현물의 유포를 통하여 대중에게 질서위반을 부추기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선동한 자

#### 7) 금지된 소음(제117조)

- 일반인 또는 이웃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거나 타인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소음을 야기한 자: 오천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8) 일반인에 대한 부담야기행위(제118조)

- 일반인에게 부담을 야기하거나 일반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

#### 9) 성적표현물을 통한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부담을 야기하는 행위(제119조)

- 성적행위에 대한 기회를 제공 또는 표현하거

나 성적인 내용을 설명한 자: 일천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그러한 행위를 문서 기타 표현물을 통하여 실행하거나 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또는 물건을 판매 또는 전시한 자: 일반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여기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한다(제123조).

#### 10) 금지된 성매매행위(제120조)

- 법규명령을 통하여 특정장소 또는 특정시간에 금지된 성매매행위를 한 자

- 문서 기타 표현물의 유포를 통하여 성적인 자위행위를 위한 기회를 제공 또는 표현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설명한 자

- 그러한 문서 기타 표현물을 판매 또는 전시한 자

- 해당 물건을 몰수한다(제123조).

#### 11) 위험한 동물의 간수(제121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험한 동물 또는 사나운 동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자

- 그러한 동물의 관리책임자로서 동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조치를 취하는 것을 부작위한 자

#### 12) 명정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제122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음료 또는 기타 다른 환각제로 인하여 명정상태에 빠져있는 자가 그러한 명정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 단, 명정상태로 인하여 행위가 유책하지 않



으면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그리고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명정상태에서 범하진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질서위반금보다 더 높은 질서위반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13) 紋章 또는 관청의기의 무단사용(제124조)**

- 연방의 문장 또는 각 주의 문장, 연방의 독수리문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장, 또는 연방 또는 각 주의 기를 권한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문장과 기를 유사하게 변형한 자

**14) 적십자 문양 또는 스위스의 국가문장의 무단사용(제125조)**

- 흰색바탕위에 적십자의 상징표현 또는 “적십자” 라는 명칭 또는 스위스연방국가의 문장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한 자

**15) 직업적 복장 또는 직업적 휘장의 남용(제126조)**

- 독일내에서 승인된 의료보호기관 또는 복지기관의 직업적 행위를 위한 복장 또는 휘장, 교회 또는 행정법상 승인된 종교단체의 복장 또는 휘장을 권한없이 착용하거나 그러한 의상 또는 휘장을 유사하게 변형한 자
- 여기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한다(제129조).

**16) 통화위조 또는 문서위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생산 또는 사용(제127조)**

- 해당관청 또는 기타 권한있는 자로부터 문서

에 의한 허가없이 화폐와 그와 동일한 유가증권, 공적 유가물,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수표 또는 상품교환권, 공문서와 공증을 위한 인장의 주형물, 조형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생산, 유통, 보관, 양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일반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공문서와 공증을 위한 인장서식의 주형물, 조형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생산, 유통, 보관, 양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오천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그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한다(제129조).

**17) 화폐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인쇄물 또는 복사본의 생성 및 유포(제128조)**

-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혼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복사물을 생성하거나 유포한 자: 일반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제1항 1호)
- 혼동할 수 있는 화폐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가증권을 생성할 수 있는 주형물, 조형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생산, 유통, 보관, 양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일반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제1항 2호)
- 외국의 화폐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가증권을 제1항 1호와 2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일반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제3항)
- 동조 제1항 1호에 적합한 혼동 또는 생성에 관하여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자: 오천유

로까지의 질서위반금(제2항)  
- 여기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한다(제129조).

### 18) 기업내에서의 관리감독의무의 위반(제130조)

공기업 또는 사적 기업의 소유주가 공기업 또는 사적 기업내에서 관리감독을 통하여 기업구성원의 법률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저지할 수 있었거나 또는 현저하게 어렵게 할 수 있었던 필수적인 관리감독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작위한 경우에, 기업구성원의 의무위반행위가 형벌로 규정된 경우에는 일백만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을, 질서위반금부과의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조항에서 규정된 질서위반금의 최고한도에 따라서 그 질서위반금을 결정한다.<sup>2)</sup>

## 2. 행위주체

질서위반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이다. 그러나 형법과는 달리 질서위반법

제30조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로서 법인과 같은 단체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한다. 이는 독일 형법전에서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자체에 대한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자체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1) 법인의 직접행위자와의 연관성

행위자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범죄 또는 질서위반죄를 범하고 그러한 범죄 또는 질서위반죄를 통하여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부담해야만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는 범죄 또는 질서위반죄를 통하여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 그 자체에게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여야만 한다.



2) 독일에서의 견해에 따르면 이 조항을 기업에 위한 기업구성원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 기업운영의 결정권자, 즉 이사들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특정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던 중 그 특정 제조물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제조물을 생산·판매한 기업은 그 제조물에 대한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하자제거를 위한 제조물의 생산 및 판매중단, 이미 판매된 제조물의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생산 및 판매회사의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 및 판매회사는 그들의 이미지훼손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제조물의 생산 및 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하자있는 제조물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손해발생후에 손해제거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위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형법상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러한 생산 및 판매행위, 그리고 손해발생후 손해제거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 외에 그러한 행위를 결정한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형법상 책임 또한 문제가 되어진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형사책임은 공범에 대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형법상 공범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위계획과 행위에의 기여가 필요한데, 특히 하자있는 제조물로 인한 형법상의 책임과 관련되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 경우에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위해 질서위반법의 본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견해가 최근에 대두하고 있다.





- 법인의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 권리능력없는 조합의 이사회 또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
- 권리능력있는 사단의 대리권자
- 법인, 권리능력없는 조합 또는 권리능력있는 사단의 포괄대리인
- 기업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책임자, 영업감사인

(2)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자체에 대한 질서위반금

- 고의에 의한 범죄: 일백만 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과실에 의한 범죄: 오십만 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
- 질서위반죄: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규정된 질서위반금의 최고한도에 따라서 그 최고한도를 결정
- 하나의 행위가 범죄와 질서위반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질서위반죄로 인한 질서위반금의 최고 한도액이 과실로 인한 범죄의 최고한도액인 오십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죄로 인한 최고한도액이 적용된다.
- 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단체들에 대하여 범죄 또는 질서위반죄로 인한 형사소송절차 또는 질서위반금부과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또는 종료되어지는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위반금만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단, 범죄 또는 질서위

반죄가 법적근거로 인하여 소추되어질 수 없는 경우 또는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전 제73조 또는 제73a조 또는 질서위반법 제29a조에 의해서 추징금이 부과되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한 독자적인 질서위반금은 부과되어질 수 없다.

### Ⅲ. 질서위반금부과를 위한 실체법적 규정

#### 1. 죄형법정주의의 원용(제3조)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원칙과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의 실행이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위의 실행만이 처벌대상이 되어진다.

#### 2. 기타 형법전의 실체법적 규정의 원용

질서위반행위는 작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통해서도 범할 수 있으며(제8조), 고의와 과실(제10조), 착오(제11조), 책임능력(제12조), 미수(제13조) 그리고 공범과 중범(제14조)에 대한 규정은 형법상 해당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형법상 해당규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용되어지며,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제15조)와 위법성조각사유적 긴급피난(제16조)를 규정하고 있다.

#### 3. 질서위반금의 한도(제17조)와 그 납입(제18조)

질서위반금 부과를 규정한 법률에 별도의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금은 최소 5유로에서 최대 100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과실행위로 인한 질서위반행위: 규정된 질서위반금의 최고한도에 대한 절반으로 그 최고한도를 삼는다.

질서위반금산정을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중요도, 행위자의 책임 그리고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만 하며, 특히 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금은 그 이익을 초과해서 부과해야만 한다(제17조). 그리고 질서위반행위자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질서위반금의 즉각적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할납부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 4. 수개 행위에 대한 죄수관계(제19조~제21조)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수개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하나의 법률을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서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고, 그 질서위반금은 최고액의 질서위반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결정한다(제19조). 그리고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 수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질서위반행위를 별도로 산정하여 질서위반금을 결정한다(제20조). 하나의 행위가 범죄뿐만 아니라 질서

위반죄를 동시에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전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고, 만약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1조).

## 5. 몰수와 추징

### (1) 몰수(제22조~제29조)

#### 1) 행위자의 소유물건(제22조)

질서위반죄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서 해당 법률이 명시적으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물건, 판결시에 행위자의 소유인 물건 그리고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일반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실행에 기여할 위험이 있는 물건은 몰수한다.

#### 2) 제3자의 소유물건(제23조)

판결시에 대상물을 소유한 사람이 비록 행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위 또는 행위의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기여하였거나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몰수해야만 한다(제23조). 몰수에 관한 확정판결시에 물건에 대한 소유와 그 권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서 해당 물건의 소유 및 권리를 인계받는 국가 또는 행정법상의 기관 또는 시설물이 제3자에게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배상해야만 한다. 그리고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위한 행위가 질서위반행위로서 간주되어지면 그러한 행위에 사용된 물건 또한 몰수한다(제29조).



### 3) 몰수명령시 비례성원칙의 고려(제24조)

몰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몰수가 행위에 대한 불법의 정도를 초과하거나 행위자의 책임 또는 제23조의 경우 제3자의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몰수를 명령할 수 없고, 물건을 사용할 수 없거나 물건에서 특정의 중요부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특정의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명령을 통하여 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명령하거나 몰수를 유보한다.

### 4)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제25조)

행위시에 행위자의 소유였던 물건을 몰수명령 이전에 양도 또는 소비, 기타의 방법으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를 행위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또한 몰수명령이전에 행위자가 제3자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손상시켜 손해배상 없이는 그 권리소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의 몰수이외에도 물건을 통한 권리손해의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때 손해배상의 금액은 물건손상의 가치에 따라서 산정한다(동조 제2항).

### 5) 몰수된 물건의 귀속(제26조)

물건이 몰수되면, 판결의 기판력을 통하여 물건에 대한 소유와 그 권리는 국가 또는 행정법상의 기관 또는 시설물로 이전된다(동조 제1항). 그리고 몰수명령은 확정판결이전에는 독일 민법 전 제136조의 의미에서의 양도금지로서의 역할을

을 수행하며, 여기에서의 금지는 양도뿐만 아니라 양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모든 다른 처분을 포함된다(동조 제3항).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가 계속해서 인정되지만, 제22조에 따라서 제3자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관계는 소멸한다(동조 제2항).

### 6) 단독의 몰수명령(제27조)

판결시에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물건의 몰수만을 명령할 수 있다.

#### (2) 추징(제29a조)

행위자가 자기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획득하였다면 획득한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징을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행위자에 대한 질서위반금 부과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에도 추징만을 단독으로 명령할 수 있다.

## 6. 공소시효와 집행시효

### (1) 공소시효

① 공소시효의 기간(제31조 제2항): 질서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질서위반금의 최고 한도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소시효를 가진다.

- 오만유로이상의 질서위반금의 경우에는 3년
- 이천오백유로에서 오만유로의 경우에는 2년
- 일천유로에서 이천오백유로의 경우에는 1년



- 그 외의 질서위반죄의 경우에는 6개월

- ② 공소시효의 개시(제31조 제3항): 공소시효는 행위의 종료시에 시작하고, 단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가 추후에 발생하면 결과발생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 ③ 공소시효의 중단(제32조): 법률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개시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공소시효이전에 최초의 법적절차에 대한 판결 또는 제72조에 의한 본재판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판결이전에는 공소시효는 경과되지 않는다.

## (2) 집행시효(제34조)

- ① 집행시효의 기간(제34조 제2항): 확정판결을 통하여 부과된 질서위반금의 집행은 다음의 집행시효를 갖는다.
  - 일천유로 이상의 질서위반금의 경우에는 5년
  - 그 이하의 질서위반금의 경우에는 3년
- ② 집행시효의 개시(제34조 제3항): 집행과 관련된 시효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시작된다.
- ③ 집행시효의 중단(제34조 제4항): 법률에 따라서 집행이 개시될 수 없거나 계속되어질 수 없는 경우, 집행이 연기된 경우 또는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부에 대한 할부가 허용된 경우에는 집행과 관련된 시효는 중단된다.

## IV. 질서위반금부과를 위한 절차법적 규정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상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원용하여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질서위반금 부과를 위한 절차상의 규정중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규정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관할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실행되거나 발견되어진 장소 또는 질서위반금부과를 위한 절차의 개시에 있어서의 행위자의 거주지에 속하는 행정관청이 그 관할권을 행사한다(제37조). 서로 관련성이 존재하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들로 인하여 서로 다른 행정관청들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관청이 관할권이 인정되지만(제38조), 그러나 경찰을 통해서 행위자가 처음으로 심문을 받고 경찰로부터 심문조서가 이관되어진 행정관청이 우선권을 가진다(제39조).

### 2. 하나의 행위가 범죄와 질서위반죄에 동시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의 관할권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가 질서위반죄와 범죄에 동시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위한 관할 검찰청과 제37조에 의한 관할 행정관청이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지만(제40조), 그러나 해당 검찰청이 관할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 검찰청은 질서위반금의 부과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권한을 인수하고, 또한 소송의 촉진, 사안의 관련성 또는 수사와 판결을 위한 이유로 인하여 검찰청에 의한 관할권행사사 유용



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행위에 대한 소추권한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수받아야만 한다(제42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으로 그 관할권이 이송되는 경우는 관할 검찰청이 형사소송절차의 개시를 포기한 경우(제41조 제2항), 검찰이 제40조의 사례에서 범죄로 인한 절차만을 종결한 경우 또는 제42조의 사례에서 검찰청이 인수를 포기한 사건이 여전히 질서위반행위로서의 소추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제43조 제1항)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서 소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행정관청은 검찰의 판단에 구속되어야만 하며(제44조), 범죄와 연결된 질서위반죄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진 경우에는 질서위반에 대한 질서위반금부과에 대한 권한은 관할법원에 주어진다(제45조).

### 3. 질서위반죄에 대한 경찰의 임무(제53조)

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은 의무와 합치되는 재량에 따라서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거나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그에 대한 서류를 지체없이 행정관청 또는 검찰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요원으로 임명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 그리고 기타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4. 행위자에 대한 심문(제54조)

당사자가 경찰관서에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심문을 받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63a조

에 따른 피의자의 심문규정에 대한 방어권의 사용은 제한되어질 수 있다. 즉 경찰은 당사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심문 이전에 선임된 변호사와의 협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

### 5. 부과된 질서위반금에 대한 이의절차(제67조 ~제69조)

당사자는 질서위반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의 서류가 배달된 후 2주 이내에 질서위반금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67조), 해당 행정관청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제68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관청은 질서위반금부과결정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취소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질서위반금부과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그 유지를 위한 결정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서류가 검찰에 도착하면 소추기관의 업무는 검찰로 이관되며, 검찰은 그 절차를 종결하거나 또는 수사보완없이 행정관청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여 법관이 검찰의 동의하에 그 이유설명과 함께 행정관청으로 그 사건을 반환할 수 있고, 사건을 반환받은 행정관청이 조사와 처벌에 대한 권한을 다시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에 대한 행정관청으로의 반환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반환하면, 그 결정이 그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이 되어 행정관청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69조).

## 6. 허용된 이의제기에 대한 본재판

질서위반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허용되면, 그러한 사건은 본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본재판을 진행한다.

## 7. 질서위반금결정에 대한 집행(제89조~제91조)

질서위반금부과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제89조), 질서위반금부과를 결정한 행정관청이 그 질서위반금부과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그 해당 행정관청의 재산으로 삼는다(제90

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질서위반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원용한다(제91조).

## 이 재 일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